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1 검토 배경

- (확진자 추이)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일 연속 200명 초과, 8.27일 300명대 초과(전국 434명)하는 등 지속 확산세 유지
 - 거리두기 3단계 상향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 표출
 - * (수도권 환자 수) (8.18.) 201명 → (8.19.) 252명 → (8.20.) 226명 → (8.21.) 244명 → (8.22.) 239명 → (8.23.) 294명 → (8.24.) 201명 → (8.25.) 212명 → (8.26.) 229명 → (8.27.) 313명
- (수도권 2단계 경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 발생 시점 도래 중이나 효과는 예측 어려움
 -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8.22(토)~8.23(일)에 직전 주말 대비 20.1% 감소, 대중교통 이용량은 19.2% 감소, 카드 매출금액은 11.5% 감소
 -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2.24~3.1일간 휴대폰 이동량 감소 추이(38.1%)에 비하면 절반 수준
- (3단계 준비상황) 관계부처·지자체들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중, 다만 서민경제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실제 시행에 대해 신중한 의견 다수
 - ※ 8.25(화) 생활방역위원회(비공개) 개최 결과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의견 다소 우세

2 추진방향

- 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 8일간 적용(~9.6*)하여 집중적으로 전개

* 전국 2단계 조치 종료시점과 일치하는 일자

(1)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줄여서 감염 전파 차단

* 최근 1주간 전체 확진자 중 20~40대는 38.5%로,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發 감염이 직장·식당 등을 통해 확산되는 양상

(2) 아동·학생들의 집단감염을 통한 가정·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

* 최근 1주간(8.20~8.26) 학생 확진자는 137명

(3)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 마련

3

방역조치 강화 방안

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 최소화

- (음식점)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수도권 일반음식점 28.8만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8.2만개, 제과점 0.8만개 등 총 37.8만개소
- (카페)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는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 최근 집단감염은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발생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수도권 2.7만개) 집합금지

② 아동·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통해 집단감염 차단

※ 수도권 내 유치원·학교는 8.26(수)부터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 실시 중

- (학원 등)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교습소 제외)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합금지, 학원의 경우 비대면수업만 허용
 - 다만, 학습자 9인 이하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집합 금지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 6만 3천개(교습소·독서실 포함)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 재택근무 활성화*,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권고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③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 최소화

- (메시지) 2주간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 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금지

-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현재 공정위에서 신고센터 운영 중

4 |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 *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는 8.31(월) 0시부터 적용, 지자체 준비 상황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은 탄력적 조정 가능
 - (각 부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소관 시설 관련 협회·기관 등에 안내
 - (지자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행정조치, 방역수칙 준수 현황 점검
- 3단계 실행계획은 부처·지자체와 지속 협의하여 수립·준비

참고1

식품접객업 종류 및 방역 조치

구분	정의	개소수 (수도권)	현재 방역 조치	강화된 방역 조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88,858	일정 규모 이상 방역수칙 의무화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82,707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다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8,840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993	집합금지 (8.19~)	좌동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8,533	집합금지 (8.19~)	좌동
계			393,931개소	

참고2

음식점 · 카페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음식점

○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외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카페

○ (대상)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참고3**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대상)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 핵심 방역수칙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참고4

실내 체육시설 현황('19.12월기준)

(단위 : 업소수)

시도	합계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실내,스크린)	체육도장	당구장	수영장(실내)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합계	54,620	282	9,130	13,998	20,724	612	9,046	72	756
서울	11,164	92	1,846	2,355	4,279	113	2,378	13	88
부산	3,011	21	497	849	912	37	643	-	52
대구	2,346	14	435	767	591	23	428	4	84
인천	3,165	7	406	852	1,400	23	452	1	24
광주	1,608	8	176	505	616	17	250	-	36
대전	1,678	7	244	453	594	29	313	1	37
울산	1,412	5	330	329	541	11	179	-	17
세종	252	-	30	104	74	7	36	-	1
경기	13,477	50	2,481	3,820	4,818	169	1,979	20	140
강원	1,812	4	296	384	844	33	235	1	15
충북	1,671	7	323	384	663	12	260	7	15
충남	1,714	6	165	467	750	26	273	8	19
전북	2,109	13	341	523	913	17	270	1	31
전남	2,274	9	280	515	1,131	31	269	8	31
경북	3,095	21	575	797	1,167	25	447	4	59
경남	3,163	15	594	832	1,124	25	512	3	58
제주	692	26	111	62	307	14	122	1	49

*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등

※ 출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 현황)